

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. 11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지난 5. 28일 장학회 설립 발기인 총회시 재단 명칭을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으로 확정하고 설립등기를 함에 따른 후속 조치
- 장학재단 임원 중 이사 수 증원으로 기관·단체 및 고액 기탁자의 재단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범시민 자발적 동참 분위기 조성

2. 주요내용

- 조례명 및 각 조항 문구 변경
 -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명을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각 조항의 문구 변경
- 이사의 수 증원(안 제3조 제1항)
 - 이사 수를 5인 이상 15인에서 5인 이상 25인 이하로 증원

3. 참고자료 : 「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정관」 제2조 및 제16조

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”를 “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민장학회”를 “구미시장학재단”으로 한다.

제1조, 제2조제3항, 제3조제1항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제3호, 제12조, 제13조 및 같은 조 제5호, 제15조 중 “장학회”를 각각 “장학재단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및 제2항, 제5조, 제10조,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장학회는”을 각각 “장학재단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5인”을 “25인 이하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장학회가”를 “장학재단이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명 :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	제명 :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	이사수 증원
제1조(목적) <u>구미시민장학회</u> (이하 " <u>장학회</u> ")라 한다).....	제1조(목적) <u>구미시장학재단</u> (이하 " <u>장학재단</u> ")라 한다).....	
.....		
.....		
제2조(설립) ① <u>장학회</u> 는.....	제2조(설립) ① <u>장학재단</u> 은.....	
.....		
② <u>장학회</u> 는	② <u>장학재단</u> 은	
.....		
③ <u>장학회</u>	③ <u>장학재단</u>	
.....		
제3조(임원 등) ① <u>장학회</u>	제3조(임원 등) ① <u>장학재단</u>	
..... <u>15인</u>	 <u>25인 이하</u>	
.....		
제4조(기금의 조성) <u>장학회</u>	제4조(기금의 조성) <u>장학재단</u>	
.....		
.....		
제5조(사업) <u>장학회</u> 는	제5조(사업) <u>장학재단</u> 은	
.....		
.....		
제6조(운영경비 등) <u>장학회</u>	제6조(운영경비 등) <u>장학재단</u>	
.....		
.....		
제7조(기금 출연) ... <u>장학회</u>	제7조(기금 출연) <u>장학재단</u> ..	
.....		
제8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 <u>장학회</u>	제8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 <u>장학재단</u>	
..... <u>장학회</u>	 <u>장학재단</u>	
제9조(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) <u>장학회</u>	제9조(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) <u>장학재단</u>	
..... <u>장학회</u>	 <u>장학재단</u>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10조(보고) <u>장학회는</u> 1. ~ 2.(생략) 3. <u>장학회</u> 제11조(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) ① <u>장학회는</u> ② <u>장학회는</u> 제12조(지도감독)..... <u>장학회</u> 제13조(<u>장학회</u>) <u>장학회</u> 1.~ 4 (생략) 5. <u>장학회</u> 제14조(잔여재산의 귀속) <u>장학회가</u> 제15조(운영규정) <u>장학회</u>	제10조(보고) <u>장학재단은</u> 1. ~ 2.(현행과 같음) 3. <u>장학재단</u> 제11조(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) ① <u>장학재단은</u> ② <u>장학재단은</u> 제12조(지도감독) <u>장학재단</u> 제13조(<u>장학재단</u>) <u>장학재단</u> 1.~ 4 (현행과 같음) 5. <u>장학재단</u> 제14조(잔여재산의 귀속) <u>장학재단이</u> 제15조(운영규정) <u>장학재단</u>	

참 고 자 료

◎ 「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정관」 제2조 및 제16조

제2조 (명칭)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칭한다)라 한다.

제16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이사 25인 이하
2. 감사 2인